

동물검역소에서의 중요한 공지사항



2019년4월22일부터

**해외로부터의 육제품 위법한
반입에 대한 대응을 엄격화합니다.**



임의 포기 여부에 상관없이 위법한 반입에는
엄정히 대처합니다.

- ◆ 수하물 중에 **수입신고가 없는 육제품 등의 축산물이
확인된 경우 벌칙 대상**이 됩니다.
- ◆ 수입검사 절차에서 여권이나 탑승권 정보를 기록하므로
검사에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.

2020년7월 1 일 (예정) 부터,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
**축산물을 불법으로 반입하다 적발되면
3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300만 엔
이하(법인의 경우 5,000만 엔 이하)의
벌금 이 부과됩니다.**

